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6허2621 등록무효(디)

원 고 A

피 고 대창금속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8. 31.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6. 3. 4. 2015당15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3호증)

-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30-0445026호/2006, 12, 4,/2007, 3, 27,
-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천정 마감재
- 3) 디자인의 설명 및 주요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갑 제6호증의 7, 8)

일본국의 이시쿠라(石倉)금속 주식회사가 1991년 ~ 1992년경에 발간한 카탈로그 책자에 게재된 '픽쳐레일(천정용 마감재)'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의 제1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7호증)

2006. 9. 19.자 등록디자인공보 제30-0426069호에 게재된 '천정용 마감재'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의 제2항과 같다.

3) 선행디자인 3-1 내지 3-5(갑 제8호증)

2004. 3. 23.자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346707호에 게재된 '천정 그늘 몰딩재'로 서, 그 도면은 [별지 2]의 제3항과 같다.

4) 선행디자인 4(갑 제9호증)

2003. 12. 1.자 등록의장공보 제30-0338951호에 게재된 '건축물 모서리 마감재'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의 제4항과 같다.

5) 선행디자인 5(갑 제10호증)

1999. 6. 1.자 등록의장공보 제30-0238004호에 게재된 '천정몰딩'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의 제5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원고는 2015. 1.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5와 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선행디자인 3-5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구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156호로 심리한 다음, 2016. 3.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5와 유사하지 아니하고, 선행디자인 1과 선행디자인 3-5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7, 8,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각 단면부의 형상이 '나', '와 같이 좌측으로 일부 개방되어 있는 'ㄷ'자 모양과 위쪽으로 개방되어 있는 'ㄷ'자 모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양 디자인에서 점선 원형으로 표시한 부분은 천정 마감재에 있어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어서형태상의 변용이 가능하므로 유사의 폭을 다른 부분보다 넓게 보아야 하고, 천정 마감재는 단면의 전체 높이나 폭이 2~4cm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결에서 제시하는 차이점은 육안으로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와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심결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 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는 사람 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 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 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나) 대상 물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대상물품은 모두 주택 등의 마무리 공사에서 천정 모서리를 마감하는 데 사용되는 천정 마감재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다) 형상 및 모양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천정 마감재로서, 압출금형에 의하여 일 정한 단면 모양을 가진 상태로 길게 뽑아지는 방식으로 생산되므로 단면 모양대로 길 게 연장된 형상을 가진다. 따라서 단면부의 형상만으로 디자인의 전체적인 특징을 파 악할 수 있으므로 양 디자인의 각 단면부를 중심으로 대비한다. 양 디자인의 각 단면 부 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2
단면부		

(1) 공통점

(2) 차이점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액자걸이 홈 부분인 ' 으 그 좌측 ' 입'의 수평면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반면, 선행디자인 2의 액자걸이 홈 부분인 ' 입'는 그 작측 ' 입'의 수평면보다 위쪽에 위치한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좌측 하단부에 별도의 걸이부가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2는 '나는 '와 같이 별도의

걸이부가 존재하지 않고 위쪽으로 트여 있는 형태의 'U'자 모양의 홈을 형성한 점,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액자걸이 홈의 좌측 상단부에서 니은자로 올라간 수직면과 그우측 상단부에서 니은자로 내려간 수직면이 서로 비슷한 길이로 대칭적으로 뻗어나간 반면, 선행디자인 2는 액자걸이 홈의 좌측 하단부에서 니은자로 올라간 수직면과 우측 상단부에서 니은자로 내려간 수직면의 길이에 큰 차이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의 작이 액자걸이 홈 부분의 상단부가 매끄러운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단부의 양측 모서리가 90도의 각진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선행디자인 2는 의 약수 모서리가 90도의 각진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선행디자인 2 는 의 양측 모서리가 120도의 각을 형성하여 2번 꺾인 상태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스 '와 같이 액자걸이 홈 부분의 하단에 볼록하게 튀어 나온 돌기가 형성되어 있고, 그 아래 부분은 오목하게 파여 있어 부드러운 곡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2는 '스 '와 같이 액자걸이 홈 부분의 하단이 직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⑥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사기 '와 같이 우측 하단 측면의

모서리가 매끄러운 선으로 구성된 반면에, 선행디자인 2는 '의 '와 같이 우측 하단 측면의 모서리가 톱니모양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3) 대비결과

공통점 ①은 액자를 대상 물품에 걸기 위하여 고리를 끼우기 위한 부분이어서 아랫부분으로 개방된 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 즉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픽쳐레일의 디자인은 공통점 ①과 같은 기본적 형태의 액자걸이 홈을 유지하면서 액자걸이 홈의 위치및 그 좌측과 우측의 프레임 형태 등을 변경하여 출원한 디자인이 다수 등록되어 왔으므로(별지 2의 각 선행디자인 및 원고 2016. 8. 19.자 변론요지서 제9 내지 제11면의각 디자인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유사 여부를 대비함에 있어공통점 ①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공통점 ②와 관련된 부분은 대상 물품이 벽면과 결합하는 부분이고, 공

통점 ③과 관련된 부분은 대상 물품이 천정패널과 결합되는 부분으로서 각 기능과 관련이 있으나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심미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공통점들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차이점들로 인하여 양 다자인은 아래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의 마음에 상이한 미감과 인상을 준다.

첫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액자걸이 홈의 좌측 하단부에 서 니은자로 연결되어 나온 별개의 프레임을 설치함으로써 별도의 걸이부가 형성되고. 이러한 프레임의 설치로 인하여 액자걸이 홈의 좌측 하단 부분에 좌측으로 트인 공간 이 형성되고 그것이 액자걸이 홈 우측 하단 부분의 우측으로 트인 공간과 서로 호응하 고 있다. 또한 액자걸이 홈의 좌측 상단부에서 니은자로 연결되어 나온 프레임이 위쪽 으로 수직면을 형성하고 있고 그 수직면과 액자걸이 홈의 좌측 하단 걸이부의 수직면 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한다. 또한 액자걸이 홈의 좌측 상단부에서 니은자로 올라간 수직면과 액자걸이 홈의 우측 상단부에서 니은자로 내려간 수직면도 서로 비슷한 길이 로 대칭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액자걸이 홈 좌측 하단 부분의 트인 공간과 그 우측 하단 부분의 트인 공간이 동일 수평면 아래에서 서 로 호응하고, 액자걸이 홈 좌측 상단의 수직면과 좌측 하단의 수직면이 동일 수직선상 에 위치하면서 서로 호응하고 있어 정돈된 느낌을 주며. 좌측 상단부에서 올라간 수직 면과 우측 상단부에서 내려간 수직면이 서로 비슷한 길이로 뻗어 호응하며 대칭적인 미감을 형성한다. 반면, 선행디자인 2에는 좌측 하단부에 니은자로 연결된 프레임의 결 여로 별도의 걸이부가 존재하지 않고 액자걸이 홈 좌측 부분의 좌측으로 막힌 공간과 그 우측 부분의 우측으로 트인 공간이 서로 호응하는 느낌이 덜하며, 액자걸이 홈의

좌측 상단부에 니은자로 올라간 수직면과 우측 상단부에서 니은자로 내려간 수직면의 길이에 큰 차이가 있어 대칭적인 미감도 주지 못한다.

둘째,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액자걸이 홈을 기준으로 좌, 우측 하부 상호간, 좌측 상부와 좌측 하부 상호간 및 좌측 상부와 우측 하부 상호간에 각 호응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미감을 준다. 반면, 선행디자인 2는 액자걸이 홈이 수평면의 위쪽에 상승하며 솟아 있고, 액자걸이 홈의 좌측에 형성된 막힌 공간과 우측의 천정패널 결합부의 트인 공간의 호응도가 덜하며, 액자걸이 홈의 좌측 상단부에 니은자로 올라간 수직면과 우측 상단부에서 니은자로 내려간 수직면의 길이에큰 차이가 있어 대칭적인 미감을 주지 못하므로,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느낌이 떨어진다.

셋째, 앞서 본 양 디자인의 차이점 ④, ⑤, ⑥은 모두 기본적 형태인 액자걸이 홈 내부나 프레임의 세부적 모양이나 형상을 약간씩 변경하는 것이어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세부적 차이점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가리켜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차이점 ④, ⑤, ⑥은 차이점 ①, ②, ③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앞서 본 안정감 및 균형감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매끄럽고 깔끔한 심미감을 주고 있다. 반면 선행디자인 2의 경우 차이점 ④, ⑤, ⑥은 차이점 ①, ②, ③과 결합하여 안정감과 균형감이 떨어지는 느낌과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매끄럽거나 깔끔하다는 느낌이 덜하다. 이로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보다 전체적으로 더 세련된 미감과 인상을 주게 된다.

넷째,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 물품인 픽쳐레일의 디자인은 기본적 형태의 액

자걸이 홈을 유지하면서 액자걸이 홈의 위치 및 그 좌측과 우측의 프레임 형태 등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와 미감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양 디자인의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부로 보아야 한다.

결국, 양 디자인은 앞서 본 부분적인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차이점 들로 인하여 디자인을 보는 사람이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다.

라) 소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5 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5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액자걸이 홈의 좌측 단면부의 형상이 '__'와 같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3-5는 그러하지 아니한 점을 제외하면,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5는 전체적인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양 디자인에서 액자걸이 홈의 모서리 부분이나 액자걸이 홈의 돌기들의 형상에 관한 차이는 상업적·기능적 변 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5와 유사하여 구 디자인보 호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2)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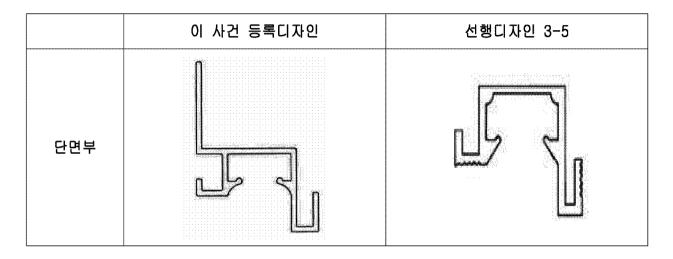
가) 대상 물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5의 대상 물품은 천정 마감재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나) 형상 및 모양의 대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5는 단면부의 형상만으로 디자인의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양 디자인의 단면부를 중심으로 대비한다. 양 디자인의 각 단면부 형상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점

(2) 차이점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나와 같이 프레임이 액자걸이 홈의 좌측 상단부에서 좌측으로 수평으로 연장되어 다시 위쪽으로 수직면이 길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3-5는 액자걸이 홈 좌측에 이와 같이 수평과 수직으로 연장된 면이 없는점,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상단부의 양측 모서리가 90도의 각진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선행디자인 3-5는 ' 와 같이 상단부의 양측 모서리내부에 볼록한 굴곡부를 형성하여 완만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점,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의 같이 액자걸이 홈 부분의 하단이 오목하게 파여 있어 부드러운 곡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선행디자인 3-5는 ' 의 약자걸이 홈

부분의 하단이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의 '와'와 같이 좌측 하단부 및 우측 측면부가 매끄러운 선으로 구성된 반면에, 선행디자인 3-5

는 ' 와 같이 좌측 하단부 및 우측 측면부가 톱니모양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3) 대비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통점 ①은 액자를 대상 물품에 걸기 위하여 고리를 끼우

기 위한 부분이어서 아랫부분으로 개방된 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5의 유사 여부를 대비함에 있어서도 공통점 ①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공통점 ③과 관련된 부분은 대상 물품이 벽면과 결합하는 부분이고, 공통점 ④와 관련된 부분은 대상 물품이 천정패널과 결합되는 부분으로서 각 기능과 관련이 있으나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심미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공통점들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차이점들로 인하여 양 다자인은 아래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의 마음에 상이한 미감과 인상을 준다.

첫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액자걸이 홈의 좌측 상단부에서 니은자로 연결되어 나온 프레임이 위쪽으로 수직면을 형성하고, 또한 액자걸이 홈의 좌측 하단부에서 니은자로 연결되어 나온 프레임이 위쪽으로 수직면을 형성하고 있으며 양 수직면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한다. 또한 액자걸이 홈의 좌측 상단부에서 니은자로 올라간 수직면과 액자걸이 홈의 우측 상단부에서 니은자로 내려간 수직면은 서로 비슷한 길이로 대칭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프레임들의 존재로 인하여 이사건 등록디자인은 액자걸이 홈 좌측 상단부의 수직면과 좌측 하단부의 수직면이 동일수직선상에 위치하면서 서로 호응하고, 액자걸이 홈 좌측 부분의 트인 공간과 그 우측부분의 트인 공간이 동일 수평면 아래에 위치하면서 서로 호응하여 정돈된 느낌을 주며, 좌측 상단부에서 올라간 수직면과 우측 상단부에서 내려간 수직면이 비슷한 길이로 뻗어나가면서 서로 호응하여 대칭적인 미감을 형성한다. 반면, 선행디자인 2에는 액

자걸이 홈의 좌측 상단부에서 니은자로 연결되어 나온 프레임의 결여로 위와 같이 좌, 우측 하부 상호간, 좌측 상부와 좌측 하부 상호간 및 좌측 상부와 우측 하부 상호간에 각 호응하는 느낌을 주지 못한다.

둘째,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액자걸이 홈을 기준으로 좌, 우측 하부 상호간, 좌측 상부와 좌측 하부 상호간 및 좌측 상부와 우측 하부 상호간에 호응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미감을 준다. 반면, 선행디자인 3-5는 액자걸이 홈의 좌측 상단부에서 니은자로 뻗어나간 프레임이 결여되어 위와 같이 각 부분 상호간에 호응하는 느낌을 주지 못하여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미감이 떨어진다.

셋째, 앞서 본 양 디자인의 차이점 ②, ③, ④는 모두 기본적 형태인 액자걸이 홈 내부나 프레임의 세부적 모양이나 형상을 약간씩 변경하는 것이어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세부적 차이점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가리켜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차이점②, ③, ④는 차이점 ①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앞서 본 안정감 및 균형감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매끄럽고 깔끔한 심미감을 주고 있다. 반면 선행디자인 3-5의 경우 차이점②, ③, ④는 차이점①과 결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정감과 균형감이 떨어지는 느낌과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매끄럽거나 깔끔하지 못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5보다 전체적으로 훨씬 세련된미감과 인상을 주게 된다.

넷째,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 물품인 픽쳐레일의 디자인은 기본적 형태의 액 자걸이 홈을 유지하면서 액자걸이 홈의 위치 및 그 좌측과 우측의 프레임 형태 등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와 미감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양 디자인의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부로 보아야 한다.

결국, 양 디자인은 앞서 본 부분적인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차이점 들로 인하여 디자인을 보는 사람이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다.

다) 소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5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 5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3-5와 선행디자인 1, 4, 5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선행디자인 3-5 '의 좌측 상단부에 선행디자인 1 '의 점선 부분을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을 창작하는 것이나, 선행디자인 3-5

'의 좌측 상단부에 선행디자인 4 ' 도는 선행디자인 5 ' 를 결합하

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을 창작하는 것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 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5와 선행디자인 1, 4, 5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후614 판결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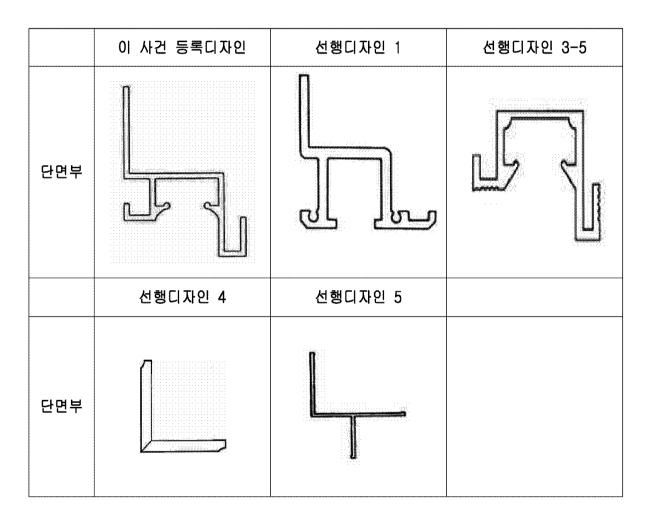
2) 판단

가) 대상 물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3-5의 대상 물품은 천정 마감재이고, 선행디자인 4, 5의 대상 물품은 각 건축물 모서리 마감재, 천정몰딩으로 천정과 벽체가 맞닿은 부분에 사용하는 마감재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3-5, 4, 5의 대상 물품은 그 용도와 기능이 모두 동일하다.

나) 형상 및 모양의 대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3-5, 4, 5는 단면부의 형상만으로 디자인의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각 디자인의 단면부를 중심 으로 대비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3-5, 4, 5의 각 단면부 형상은 다 음과 같다.



다) 선행디자인 3-5에 선행디자인 1, 2, 4를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5와 대비할 때 전체적으

로 안정감, 균형감, 깔끔함, 세련미 등이 돋보여 디자인을 보는 사람에게 상이한 심미감을 준다.

한편, 선행디자인 1은 '신 '와 같이 액자걸이 홈 좌측 윗면이 수평으로 연장되어 다시 위쪽으로 수직면이 길게 형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선행디자인 1의 액자걸이 홈, 액자걸이 홈의 좌측, 우측 부분은 그 형성 위치나 전체 디자인에 결합되어 있는 구체적 형상·모양 등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선행디자인 4, 5는 모두 천정마감재로 각 ' ' '와 같이 니은자로 꺾인 형태가 있으나, 선행디자인 4, 5는 단순히 천정모서리 부분에 접착되는 천정 마감재이고 형태도 니은자로 꺾인 구조로 매우 간단한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액자나그림을 걸 수 있도록 액자걸이 홈이 형성되어 있는 천정 마감재로 전체적인 형상·모양등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주는 전체적인 안정감, 균형감, 깔끔함, 세련미 등은 선행디자인 1, 3-5, 4, 5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심미감이다. 따라서 선행디자인 1, 4, 5 중 어느 하나를 선행디자인 3-5와 단순히 조합하는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해 낼 수가 없고, 그 밖에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와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천정 마감재를 형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3-5와 선행디자인 1, 4, 5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5와 선행디자인 1, 4, 5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할수 없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영준

판사 권동주

판사 김동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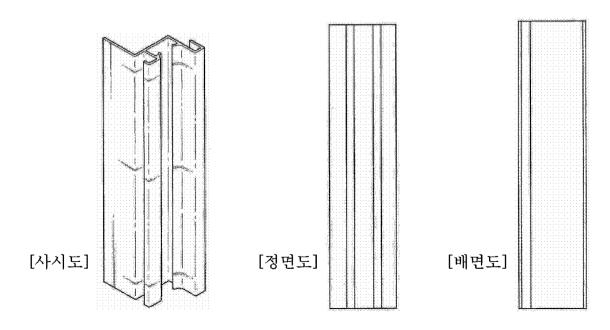
[별지1]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3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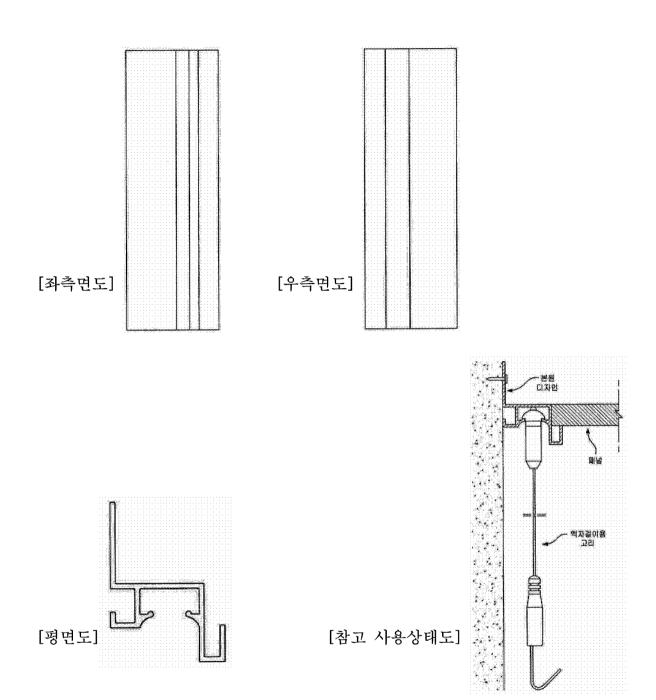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천정 마감재

【디자인의 설명】

- 1. 재질은 목재, 합성수지재 또는 금속재임.
- 2. 본원 디자인은 주택 등의 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시 천정 모서리를 마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액자나 그림 등을 걸 수 있도록 액자걸이 홈이 형성되어 있음.
- 3. 참고 사용 상태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원 디자인의 좌측면을 거실 등의 실내 벽면 상단에 고정시킨 후, 절곡된 홈 내로 액자걸이용 고리를 걸고, 패널 체결부에 패널을 고정시켜 천정을 마감하는 것임.
 - 4. 상, 하 방향으로 연속 반복되는 것으로 임의의 길이로 절단하여 사용하는 것임.

[주요 도면]





[저면도] 평면도와 대칭임

[별지2] 선행디자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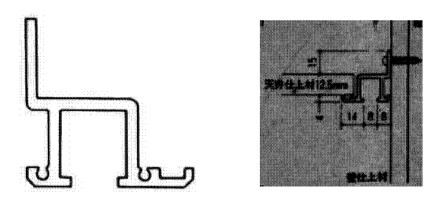
1. 선행디자인 1(갑 제6호증의 7. 8)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픽쳐레일

【디자인의 설명】

위 디자인들은 픽쳐레일에 관한 것으로 중앙에 사각형의 액자걸이용 홈이 있고, 좌 측에는 천장의 패널을 얹어 결합시킬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우측면은 벽체에 고정될수 있다. 이 디자인은 길이방향을 중심으로 할 때 한쪽 끝에서의 측면도와 그 반대편다른 쪽 끝에서의 측면도가 서로 거울처럼 반대되는 것이다.

[주요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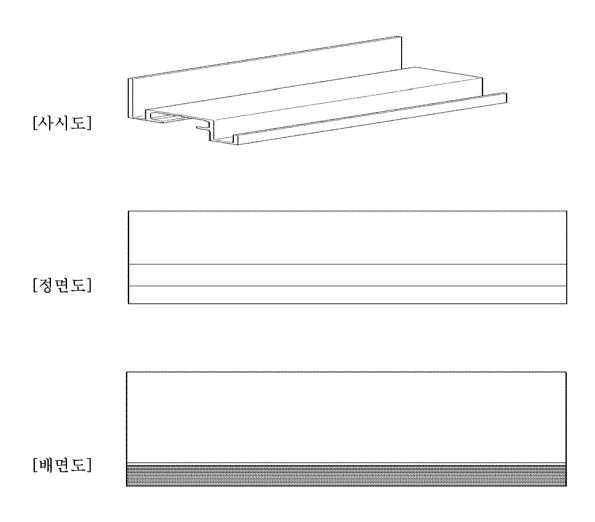
- 일본 이시쿠라(石倉) 금속주식회사가 1990년 ~ 1991년경에 발간한 카탈로그 책자(88페이지 하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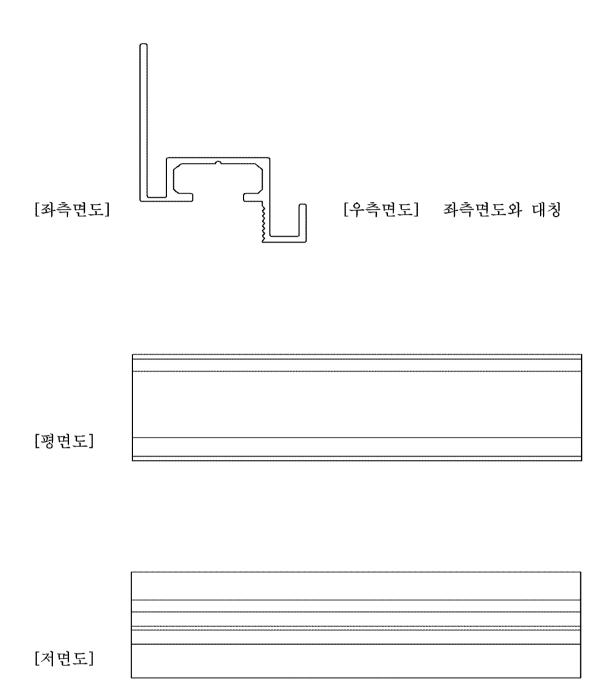
2. **선행디자인 2**(갑 제7호증)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천정용 마감재

【디자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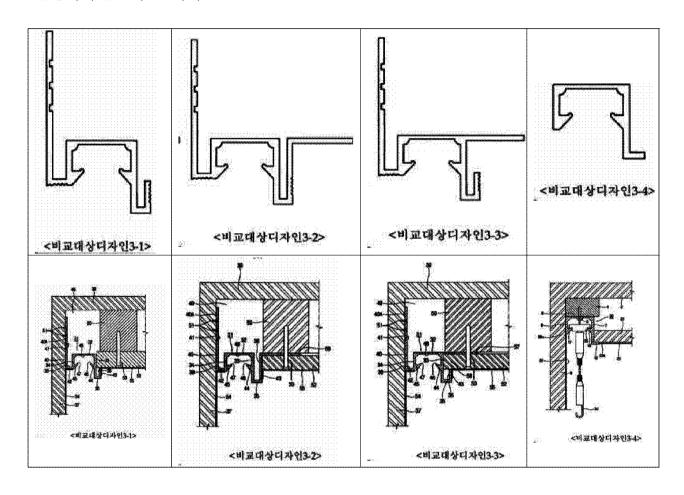
- 1. 재질은 금속 또는 합성수지임.
- 2. 본원디자인은 주택이나 일반 건물의 천정을 미려하게 마감을 시켜 주거나, 물건(액자 등)을 걸 수 있는 등의 여러 복합기능을 제공하는데 사용이 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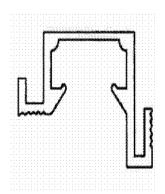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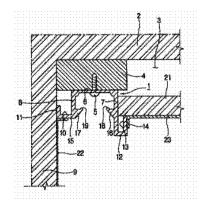
3. 선행디자인 3의 1 내지 5(갑 제8호증)

〈선행디자인 3의 1 내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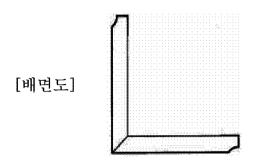
<선행디자인 3-5>





4. 선행디자인 4(갑 제9호증)

[주요 도면]



5. **선행디자인** 5(갑 제10호증)

【주요 도면】

